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 요구·보고의 근거 신설〉

■ 박상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19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 요구·보고의 근거 신설	3
2.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경우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	5
3.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	10
4.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 신설	12
5.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 설치	16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박상웅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31.
3. 회부연월일 : 2025. 01. 0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2018. 10. 16. 이 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대표적인 지역 단위의 규제개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증 과정에서 안전성을 우려한 규제 관계 부처의 과도한 조건의 부가로 사업개시 또는 실증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규제자유특구의 관리 체계가 지정기간 내 점검·관리 중심으로 되어 있어 지정해제 후의 성과 관리를 위한 수단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시책의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추진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행정조직 법정주의와 부합하도록 업무 또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근거도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 요구·보고의 근거 신설(안 제84조제2항 신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관리 및 임시허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84조(사후관리) ① (생략) <u><신설></u>	제84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u>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관리 및 임시허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u>
<u>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관리 및--</u> ----- ----- ----- -.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시허가 등 특례의 적용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재검토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¹⁾.

그런데 현행법은 지정 및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의 임시허가 등 특례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재검토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해제 이후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사전준비에서 실증완료까지 진행 단계별로 현장 점검 중심의 사후관리 체계를 운용 중이나, 해당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기간²⁾ 내에만 적용되고 있어, 지정 해제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수단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정안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토대로 사업 진행부터 성과·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에 기반한 특구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4조(사후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협조를 받아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의 적용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재검토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은 보통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인 4년(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의 범위에서 정해지고, 해당 특구 내 특례사업의 추가 등으로 특구 지정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음

다만, 규제자유특구 지정 해제 이후에도 해당 특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개정안의 조문은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관리 및 임시허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이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기간 내인지 지정 해제 이후인지에 관해 혼동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현행법 제84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관계기관”으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개정안도 이에 따르는 것이 적절해 보임.

2. 규제특례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경우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안 제86조제5항 및 제90조제7항 신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조건을 붙일 때 조건 부가로 인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경우 조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5항 및 제90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 ③ (생략)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기간, 규모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 ⑤
(생략)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후단 신설>

-----있되,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 부가로
인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
기업부장관에게 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
증하는 서류를 중소기업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이 경우 중소기업
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조건 부가로 인한 규제자유
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신 설>	야 한다.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6항에 따른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현행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실증특례의 부여 또는 임시허가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시·도지사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 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³⁾).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실증특례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부여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은 지역, 기간, 규모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

이 때의 ‘조건’은 ‘행정행위의 부관’에 해당하고, ‘부관’이란 일반적으로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부과된 종된 규율’로 정의됨.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증특례를 부여하거나 임시허가를 할 때 부관인 조건을 부가하더라도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조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등 조건의 내용적·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음.

판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재량행위로 보면서,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조건 등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입장이며⁴⁾,

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임시허가의 안전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면서 그 공원시설 등을 사용수익할 권한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관계 법령에 행정처분의

「행정기본법」 제17조제1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부관의 내용적인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⁵⁾,

개정안과 같이 개별법에서 실증특례의 부여 및 임시허가 등 재량적 처분에 대하여 붙이는 부관의 요건을 따로 정한 것은 조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입증을 의무화하여 비례원칙과 부당결부금지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는 취지라고 이해됨.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특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포괄적·불명확한 부가조건, 실증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실증 목적과 무관한 부가조건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관리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의 것인 이상 거기에 부관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64 판결 참조).

5) 「행정기본법」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3.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안 제97조의2 신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안 제97조의2 신설), 시행령⁶⁾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97조의2(국제협력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 2.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 3. 해외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4.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8조의2(국제협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시책의 수립·시행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책임·의무에 관한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집행을 유도하는 등 법률의 입법목적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국가 등의 정책적 책무를 규정하여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언적·유도적 성격을 가짐⁷⁾.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그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다만, 개정안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추진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례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기존에 시행령의 규정형식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⁸⁾.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1.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
2.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
3. 해외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7)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pp. 255-257.

8)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 신설(안 제141조의5 신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관계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1조의5(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관계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다는 것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

간 기관·단체 등에 맡기고, 이를 받은 수임자·수탁자가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권한의 “위임”이란 원(原) 권한자인 행정기관의 권한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그의 지휘 계통에 속하는 하급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하고, 사무의 “민간위탁”이란 사무의 수탁자가 행정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나 개인이 되는 경우, 즉,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이 되는 것을 말함.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는 법률로 정해지는데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것은 그 권한을 가진 자를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위임·위탁의 근거를 두어야 함¹⁰⁾.

현행법은 법률에 위임·위탁의 근거를 두지 않고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운영,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¹¹⁾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¹²⁾ 등에 따라, 개정

9)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10)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2024.12., pp. 488.

1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7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운영 등 업무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운영,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권한 위임의 근거도 마련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제141조의5제1항에 권한 위임의 수임자 중 하나로 규정된 “그 소속 기관의 장”은 개정안의 취지 및 현행법의 체계를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비수도권 시·도지사등” 뒤에 위치함으로써 비수도권 시·도 자치단체의 소속기관장으로 오

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4. 그 밖에 산·학·연 간의 상호협력과 교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의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평가에 관한 업무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운영,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16호)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이 요령에서 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② 전담기관은 특구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한다.

1. 법 제77조, 제79조 등에 따른 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83조에 따른 특구의 운영성과평가에 관한 업무
3. 법 제84조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86조 및 제90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및 변경 등
5. 법 제87조에 따른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6.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특구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7. 법 제97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업무
8. 특구 관련 자료 조사 및 통계 구축 등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특구의 지정·운영,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2)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_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7., pp. 253-260.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례¹³⁾를 참고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또한, 개정안 제141조의5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직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직원이나 개인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임.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¹⁴⁾에 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은 「지방공기업법」 제83조¹⁵⁾에서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에 따른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개별 법률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지만, 개정안은 민간위탁의 수탁자로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단체 등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5) 「지방공기업법」

제8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
2. 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5.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 설치(안 제141조의6 신설)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지역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¹⁶⁾에서 법률로 상향 하려는 것임(안 제141조의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1조의6(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규제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비수도권 시·도등의 조례로 정한다.

해당 조문은 현행 시행령의 내용과 동일하며,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별 자율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1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8조(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규제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비수도권 시·도등의 조례로 정한다.

문 의 처
02) 6788-5467